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공원·관광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 근거 마련〉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2.
3. 회부연월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제161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지역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3. 공원 및 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4.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거나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 4. (생략) <u><신 설></u> ② (생략)	<u>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구간의 위치·범위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u> <u>제160조의2(과태료) 제13조의3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 또는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0조의2의 과태료: 시·도 경찰청장 ② (현행과 같음)

개인형 이동장치¹⁾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²⁾ 등에 따라 도로주행이 가능한 상황임.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행정안전부령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정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³⁾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25년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음.⁴⁾

서울시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전국 최초이며,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함.⁵⁾

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생략)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서울시 2025년 5월 12일 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5) 서울시 2025년 5월 12일 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참고로,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98.4%가 찬성함. 시행 전 후 효과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량 감소(80.4%), 충돌위험 감소(76.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보행환경 개선(69.2%)으로 조사됨.⁶⁾

그리고, 인천시는 2025년 12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의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함.⁷⁾

부산시 수영구에서는 2021년 1월 25일부터 광인리해수욕장의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 및 관광지 등 보행자

6) 중앙일보 2025년 11월 3일 기사,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했더니...시민 98% ‘확대’ 찬성”

7) 연합뉴스 2026년 1월 5일 기사, “인천시, ‘킥보드 없는 거리’ 3곳 지정...서울시 이어 두번째”

8) MBN MEDIA T 2021년 3월 18일 기사, “수영구,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전국에서 ‘톱’” 수영구, “2021년 수영구 교통안전시행계획” 11면, 2021. 2.

역점 1.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관리

○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홍보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구간 지정 고시 및 운영

- 대 상: 광안리해수욕장 자전거도로(수영-7 광안해변로)

- 유 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비분리형

- 규모/구간: L=1.5km / 남천동 148-2 ~ 민락동 181-84

밀집지역 등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키포드 없는 거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도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6조⁹⁾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되, 시·도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¹⁰⁾ 지방자치단체가 키포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6조에 항을 신설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경찰 사무로, 현행 법령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이 가능하고, 통행금지의 경우 교통여건 및 도로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주무기관인 경찰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선심성 규제를

9)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나목6)에 따르면 그 밖에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키포드 없는 거리 지정에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남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6개의 시·도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역 45구역¹¹⁾을 설정함.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조례를 통해 1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3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조례 제3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하고 있고(조례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 6788-5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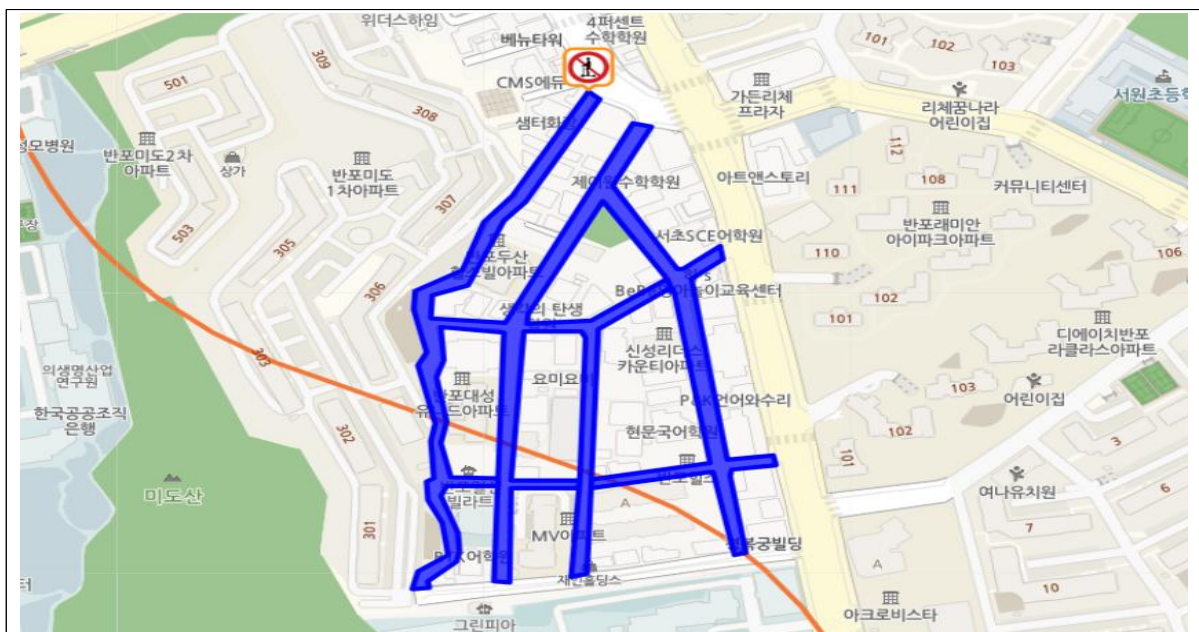
11) 서울경찰청 2구역, 부산경찰청 13구역, 인천경찰청 3구역, 대구경찰청 1구역, 경기남부경찰청 25구역, 충남경찰청 1구역 설치하고 있음.

참고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구간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도로구간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도로 구간



자료: 서울시 2025년 5월 12일 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키포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참고 2 시도경찰청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역 설치 현황

시·도경찰청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역 설치 현황

연번	시도청	경찰서	구간	연장(km)
1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대레드로드 일부 구간	1.3
2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반포학원가 일대	2.3
3	부산경찰청	수영경찰서	해양스포츠센터 ~ 민락회타운	1.5
4	부산경찰청	남부경찰서	대연동 황령터널 내 양방향	2.0
5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동구 범일동~구서IC / 변영로, 충장고가로	18.1
6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8부두사거리~감전IC / 동서고가, 우암고가	14.0
7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동구 해양항만청 인근~삼락IC / 관문대로	10.8
8	부산경찰청	해운대경찰서	올림픽교차로~좌동지하차도 / 장산로	5.0
9	부산경찰청	북부경찰서	남해고속도로종점~만덕대로/내부순환도로	2.1
10	부산경찰청	남부, 수영, 해운대	49호광장~센텀시티요금소 /광안대로	8.0
11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통전교차로~부산시계 / 외부순환도로	4.4
12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부산, 경남경계 공유수면 ~강서구 천성동	6.4
13	부산경찰청	강서, 사하경찰서	명지동 75호광장~신평동 66호광장	4.9
14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미음동 미음교차로~김해시 장유동 녹산터널	3.5
15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지사동 웅동터널 입구~지사터널 입구	1.0
16	인천경찰청	연수경찰서	신송로 125번길 일원	0.3
17	인천경찰청	연수경찰서	송도동 20-17 일원	1.6
18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부평역 테마의거리	0.7
19	대구경찰청	달서경찰서	달서구 월성성당 ~ 월성보성타운 동편	0.4

20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장안경찰서	창룡문지하차도(양방향)	0.5
21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장안경찰서	장안지하차도(양방향)	0.6
22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장안경찰서	밤밭지하차도(양방향)	0.8
23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장안경찰서	밤밭고가차도(양방향)	0.6
24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	원천지하차도(양방향)	0.8
25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	매여울지하차도(양방향)	0.5
26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	매원초등학교 보호구역 1구간	0.4
27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	효동초 보호구역 1구간	0.2
28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권선경찰서	권선지하차도(양방향)	0.9
29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권선경찰서	대황교지하차도(양방향)	0.3
30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권선경찰서	곡정초 보호구역 2구간	0.3
31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권선경찰서	터미널고가(양방향)	0.9
32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효원지하차도(양방향)	0.9
33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화서지하차도	0.5
34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정천지하차도	0.3
35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화산지하차도	0.3
36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동수원고가도로	0.6
37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우만고가도로	0.4
38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동수원고가도로	0.6
39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우만고가도로	0.4
40	경기남부경찰청	군포경찰서	금정역 하부 통로 (군포로 ~ 공단로)	0.1
41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소명지하차도	0.3
42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동남지하차도	0.5
43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중동고가교	0.4
44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성심고가교	0.3
45	충남경찰청	보령경찰서	보령해저터널	7.9